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74
----------	-------

발의연월일 : 2019. 4. 8.

발의자 : 안호영 · 김현권 · 이용주

김철민 · 이용득 · 윤일규

소병훈 · 박재호 · 김영진

이원욱 · 강훈식 · 최인호

서삼석 · 이후삼 · 윤영일

어기구 · 이규희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함에도, 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5호, 제4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을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을 “다른”으로, “경우”를 “경우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로 한다.

제40조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을 “다른”으로, “사람은”을 “사람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u>국토교통부장관</u>으로부터 <u>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 style="margin-left: 2em;"><u>&lt;신 설&gt;</u></p>	<p>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          -----          -----.            ③ 누구든지 <u>국토교통부장관</u>로부터 <u>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u></p>
<p>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p>	<p>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          -----          -----          -----          -----.          -----.</p>

<p>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u>제32조제2항</u>을 위반하여 <u>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u></p> <p>6. (생 략)</p> <p>② (생 략)</p> <p>제40조(별 칙) <u>제32조제2항</u>을 위반하여 <u>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u>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u>-----<u>다른</u>----- ----- ----- ----- -----<u>경우</u> <u>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u></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별 칙) <u>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u>-----<u>다른</u>----- ----- ----- -----<u>사람</u> <u>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은</u>----- ----- -----.</p>
---	--